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자	국무위원 ○○○ (여성가족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명칭 변경을 포함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 및 공포(2023.4.12.)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과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개정하고, 현재 한부모가족 복지상담소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이 부재하므로 이를 규정하여 시설 운영과 관련한 애로점을 해소하고자 함

한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을 규정한 현행 별표1은 2010년 이후 별도 개정 없이 유지되어온 바,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하며, 입소기간 연장 사유도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어 이로 인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변경(별표1 제1호)

- 1) 현행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은 설정된 뒤 10년 이상이 경과하여 설정 당시와 현재의 정책 환경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 유형별 시설의 기본 입소기간을 연장하는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개편을 반영하여 입소기간을 개정함”

3) 시설 기본 입소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 연장 사유의 확대(별표1 제2호)

“입소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가 한정됨에 따라 학업, 취업 및 창업 등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입소기간 연장에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에 열거되지 않은 자립준비 사유를 추가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판단으로 별도로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의 개정(별표2 제2호 및 제3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개편에 따른 명칭을 반영하고, 해석상 혼동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과 함께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이 부재하였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기준을 정비하였음.”

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의 개정(별표3)

“여타 사회복지시설과 비교할 때 입소정원 대비 종사자 배치 수준이 열악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개편 유형에 따라 종사자를 증원하였으며,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이 부재하였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신설하였음.”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 수렴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7. 20. ~ 08. 29.) 예정

3) 행정규제 심사 예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 유형		입소기간	연장가능 입소기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출산지원시설	법 제19조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해당 시설	1년 6개월 이내	6개월
	법 제19조제1항 제1호 다목 해당 시설	2년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에서 연장
나. 양육지원시설		3년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에서 연장
다. 생활지원시설		5년 이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에서 연장
라. 일시지원시설		6개월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에서 연장

별표 1 제2호가목 중 “학교”를 “학교(「초·중등교육법」상 학교 포함)”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경우”를 “경우 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모 또는 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교육에 참여한 중인 예비창업자이거나 최초 창업일로부터 3년 미만인 초기창업자인 경우

마. 모 또는 부가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력인정 시험 학습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응시 신청을 한 경우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 또는 질병이나 자립 준비 등의 사유로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기타 사유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의 기간과 별도로 시설 입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 유형		입소정원	시설의 최소면적
가. 출산지원	법 제19조제1항	30명 이상 70명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명)

시설	제1호 가목 및 나목 해당 시설	10명 이상 30명 미만	13.21제곱미터×정원(명)
	법 제19조제1항 제1호 다목 해당 시설	5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세대)
나. 양육지원시설		5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20.79제곱미터×정원(세대)
다. 생활지원시설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56.1제곱미터×정원(세대)
라. 일시지원복지시설		10명 이상 70명 이하	9.9제곱미터×정원(명)
마.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	82제곱미터 ※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 시설내에 설치, 운영하는 경우 49제곱미터 이상

별표 2 제3호가목2)가) 본문 중 “거실, 사무실(입소자”를 “생활실, 사무실(정원”으로, “이용자 30명”을 “30명”으로 하고, 같은 가) 단서 중 “입소자”를 “정원”으로, “이용자 30명”을 “30명”으로 하며, 같은 2) 나)(1) 및 (2)를 각각 (2) 및 (1)로 하고, 같은 나) (2)(종전의 (1)) 중 “부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 및 자립생활지원형 :”을 “양육지원시설 : 프로그램실,”로 하며, 같은 나) (1)(종전의 (2)) 중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을 “출산지원시설”로, “(이용자”를 “(정원”으로 하고, 같은 나) (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1)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중 “거실”을 “생활실”로 하며, 같은 1) 다) 중 “모자·부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 및 자립생활지원형의 거실”을 “생활지원시설의 생활실”로 한다.

(3) 일시지원복지시설 : 식당 및 조리실 등(단, 운영위원회 의 결을 통해 설치하기로 의결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음)

3)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일반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가) 사무실, 상담실(사무실과 겸용 불가), 프로그램실, 비상재해 대비시설

별표 2 제3호나목1)다) 중 “거실의”를 “생활실의”로 하고, 같은 1) 라) 중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의 거실의 실제면적은 이용자”를 “출산지원시설 생활실의 실제면적은 각 생활실 정원”으로 하며, 같은 1) 마) 중 “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공동생활지원형의 거실”을 “양육지원시설 생활실”로, “거실의”를 “생활실의”로 하고, 같은 1) 바) 중 “일시지원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거실의 실제면적은 이용자”를 “일시지원시설 생활실의 실제면적은 각 생활실 정원”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상담실의”를 “상담용”으로 하고, 같은 목 12) 중 “교양교육실”을 “프로그램실”로 하며, 같은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고정>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한부모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공간으로 프로그램실을 갖추어야 한다. 프로그램실은 33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 프로그램 실시에 필요한 집기 등의 설비 및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3 기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설 유형	시설 규모	종사자의 수							
		시설장	사무	생활	생활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관리인

				국장	복지사	지도원				
가. 출산지원 시설	법 제19조 제1항 가목 및 나목 해 당 시설	70명 이하 50명 이상	1	1	5	5	2		2	1
		50명 미만 30명 이상	1	1	4	3	1		1	1
		30명 미만 10명 이상	1	1	2	3	1		1	
	법 제19조 제1항 다목 해당 시설	3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	1	1	1	1				
		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	1		1	1				
나. 양육지원시설		30세대 이하 10세대 이상	1	1	1	1				
		10세대 미만 5세대 이상	1		1	1				
다. 생활지원시설		30세대 이하 20세대 이상	1	1	2	2				1
		20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1	1	1	1				1
라. 일시지원시설		70명 이하 30명 이상	1	1	2	3			1	1
		30명 미만 10명 이상	1	1	1	2			1	1
마. 한부모가족복지상담 소		-	1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
경과조치를 고려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2025.10.12.까지 시행규칙
별표의 설치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갖추도록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 (제9조의7 관련) 1. 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별표1]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기간 (제9조의7 관련) 1. 시설 유형별 입소기간		
시설 유형	입소기간	연장가능 입소기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시설 유형	입소기간	연장가능 입소기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모자가족복지시설	1) 기본생활지원형	3년 이내	가. 출산지원시설	<u>법 제19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u>	1년 6개월 이내 6개월
	2) 공동생활지원형	2년 이내		<u>법 제19조 제1항제1호 다목</u>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에 연장
	3) 자립생활지원형	3년 이내	나. 양육지원시설	3년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에 연장
나. 부자가족복지시설	1) 기본생활지원형	3년 이내	다. 생활지원시설	5년 이내	1년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2년 이내에 연장
	2) 공동생활지원형	2년 이내	라. 일시지원시설	6개월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에 연장
	3) 자립생활지원형	3년 이내	2. 입소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 가. 모 또는 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		

			에서 연장
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1) 기본생활지원형	출산 전·후 1년 이내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공동생활지원형	2년 이내	6개월 미만의 기간을 단위로 하여 총 1년 이내. 다만,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의 경우에는 총 6개월 이내에서 연장
라. 일시지원복지시설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입소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경우

가. 모 또는 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나. <생략>

다. 모 또는 부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입소기간의 연장을 인정하는 경우

[별표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의2제1항 관련)

1. 입지조건

<생략>

학 이하의 학교(「초·중등교육법」상 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나. <좌동>

다. 모 또는 부가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또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라. 모 또는 부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교육에 참여 중인 예비창업자이거나 최초 창업일로부터 3년 미만인 초기창업자인 경우

마. 모 또는 부가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력인정 시험 학습과정을 이수 중이거나 응시 신청을 한 경우

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 또는 질병이나 자립 준비 등의 사유로 입소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기타 사유에 의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의 기간과 별도로 시설 입소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제10조의2제1항 관련)

1. 입지조건

<좌동>

2. 시설 유형별 규모

시설 유형별로 다음의 세대 또는 인원이 입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 유형		입소정원	시설의 최소 면적
가. 모자가 족 복지시 설	1) 기본생 활 지원형	10세대 이상 30 세대 이하	56.1제곱미 터×정원(세 대)
	2) 공동생 활 지원형	5세대 이 상 20세 대 이하	20.79제곱미 터×정원(세 대)
	3) 자립생 활 지원형	10세대 이상 30 세대 이하	56.1제곱미 터×정원(세 대)
	4) 자립생 활 지원형	10세대 이상 30 세대 이하	56.1제곱미 터×정원(세 대)
나. 부자가 족 복지시 설	1) 기본생 활 지원형	10세대 이상 30 세대 이하	56.1제곱미 터×정원(세 대)
	2) 공동생 활 지원형	5세대 이 상 20세 대 이하	20.79제곱미 터×정원(세 대)
	3) 자립생 활 지원형	10세대 이상 30 세대 이하	56.1제곱미 터×정원(세 대)
	4) 자립생 활 지원형	10세대 이상 30 세대 이하	56.1제곱미 터×정원(세 대)
다. 미혼모자 가족 복지시 설	1) 기본생 활 지원형	30명 이 상 70명 이하	20.79제곱미 터×정원 (명)
	2) 공동생 활 지원형	10명 이 상 30명 미만	13.21제곱미 터×정원 (명)
	3) 자립생 활 지원형	5세대 이 상 30세 대 이하	20.79제곱미 터×정원(세 대)
	4) 자립생 활 지원형	5세대 이 상 30세 대 이하	20.79제곱미 터×정원(세 대)
라. 일시지원복지시설		10명 이 상 70명 이하	9.9제곱미터

2. 시설 유형별 규모

시설 유형별로 다음의 세대 또는 인원이 입소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시설 유형		입소정원	시설의 최소 면적
가. 출산지 원 시설	법 제19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 목 해당 시 설	30명 이 상 70명 이하 10명 이 상 30명 미만	20.79제곱미 터×정원 (명) 13.21제곱미 터×정원 (명)
	법 제19조 제1항제1호 다목 해당 시설	5세대 이상 30 세대 이하	20.79제곱미 터×정원(세 대)
	나. 양육지원시설	5세대 이 상 30세 대 이하	20.79제곱미 터×정원(세 대)
	다. 생활지원시설	10세대 이 상 30세대 이하	56.1제곱미 터×정원(세 대)
라. 일시지원복지시설		10명 이 상 70명 이하	9.9제곱미터 ×정원(명)
마. 한부모가족복지상 담소		—	82제곱미터 ※상담소를 한부모가 족복지시 설내에 설 치, 운영 하는 경우 49제곱미

	상 70명 이하	× 정원(명)
--	-------------	---------

3.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생략>

2)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공통시설 : 거실, 사무실(입소자 20세대 이하 또는 이용자 30명 미만은 상담실을 겸용), 상담실, 도서실, 화장실(목욕실 겸용설치 가능), 목욕실, 급수 및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비실, 창고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다만, 도서실, 목욕실, 경비실 등은 입소자 20세대 이상 또는 이용자 30명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나) 시설 유형별 추가 설비시설

- (1) 부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 및 자립생활지원형 : 식당 및 조리실 등
- (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 : 교양교육실, 의무실(이용자 30명 미만의 시설은 산후회복실 겸용), 산후회복실, 식당 및 조리실 등
- (3) 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공동생활지원형 : 교양교육실 등

나. 설비기준

1) 거실

가) <생략>

나) <생략>

다) 모자·부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형 및 자립생활지원형의 거실에는

		터 이상
--	--	------

3. 시설 유형별 구조 및 설비기준

가. 일반기준

1) <좌동>

2) <좌동>

가) 공통시설 : 생활실, 사무실(정원 20세대 이하 또는 30명 미만은 상담실을 겸용), 상담실, 도서실, 화장실(목욕실 겸용설치 가능), 목욕실, 급수 및 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경비실, 창고 등 그 밖의 부대시설. 다만, 도서실, 목욕실, 경비실 등은 정원 20세대 이상 또는 30명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나) 시설 유형별 추가 설비시설

- (1) 출산지원시설 : 프로그램실, 의무실(정원 30명 미만의 시설은 산후회복실 겸용), 산후회복실, 식당 및 조리실 등
- (2) 양육지원시설 :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등
- (3) 일시지원복지시설 : 식당 및 조리실 등(단,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설치하기로 의결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음)

3)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는 다음의 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일반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가) 사무실, 상담실(사무실과 겸용 불가), 프로그램실, 비상재해대비시설

나. 설비기준

1) 생활실

가) <좌동>

나) <좌동>

다) 생활지원시설의 생활실에는 부엌을 포

	2) 공동 생활지 원형	10세대 이 상								
		20세대 이 하 10세대 이 상	1		1	1				
		10세대 미 만 5세대 이상	1		1					
	3) 자립 생활지 원형	30세대 이 하 20세대 이 상	1	1	1					
		20세대 미 만 10세대 이 상	1		1					
	나. 부자가 족 복지시 설	1) 기본 생활지원 형	30세대 이 하 20세대 이 상	1	1	1	2			1
20세대 미 만 10세대 이 상			1	1	1	1			1	
2) 공동 생활지 원형		20세대 이 하 10세대 이 상	1		1	2				
		10세대 미 만 5세대 이상	1		1	1				
3) 자립 생활지 원형		30세대 이 하 20세대 이 상	1	1	1					
		20세대 미 만 10세대 이 상	1		1					
다. 미혼모 자가족 복 지시설		1) 기본 생활지 원형	70명 이하 50명 이상	1	1	5	4	1	1	
			50명 미만 30명 이상	1	1	3	3	1	1	
			30명 미만 10명 이상	1	1	1	3	1	1	
		2-1) 공 동생활 지원형 (미혼모 자)	30세대 이 하 10세대 이 상	1		1	1			
			10세대 미 만 5세대 이상	1		1				
		2-2) 공	30세대 이	1		1				

	법 제19 조제1항 다목 해 당 시설	30세대 이 하 10세대 이 상	1	1	1	1				
		10세대 미 만 5세대 이상	1		1	1				
나. 양육지원시설		30세대 이 하 10세대 이 상	1	1	1	1				
		10세대 미 만 5세대 이상	1		1	1				
다. 생활지원시설		30세대 이 하 20세대 이 상	1	1	2	2				1
		20세대 미 만 10세대 이 상	1	1	1	1				1
라. 일시지원시설		70명 이하 30명 이상	1	1	2	3			1	1
		30명 미만 10명 이상	1	1	1	2			1	1
마. 한부모가족복 지상담소		-	1		2					

※ 비고: 영양사의 경우 입소 또는 이용자가 상시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동생활 지원형 (미혼 모)	하 10세대 이 상							
		10세대 미 만 5세대 이상	1		1				
라. 일시지원복지 시설		70명 이하 30명 이상	1	1	1	3			1
		30명 미만 10명 이상	1	1	1	2			
※ 비고: 영양사의 경우 입소 또는 이용자가 상사 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연 락 처	(02) 2100 - 6348